

주택건설(대지조성)사업자

◆ 등록기준

종류	자본금	기술능력	사무실
법인	3.0억원 이상	주택건설사업자 :[건설기술 진흥법] 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자 :[건설기술 진흥법] 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 1인 이상	사무실
개인	6.0억원 이상		사무실

* [건설산업기본법] 에 의한 건축공사업, 토목공사업, 토목건축공사업 보유시 등록기준(자본금, 기술인력) 중복 인정 가능

◆ 등록대상

- ※ 주택건설사업자
 - 연간 20호(세대) (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)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
- ※ 대지조성사업자
 - 연간 1만 ㎡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 하려는 자

◆ 사무실

*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, 축사, 퇴비사, 온실, 저장고등 농업,임업,축산,어업 용 건물, 그 밖에 상시 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◆ 신규등록 소요기간

*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 등록증 발급